

● 제332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10.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 안 자 : 곽향기 의원(27명 찬성)
- 나. 제 안 일 : 2025. 8. 11.
- 다. 회 부 일 : 2025. 8. 14.
- 라. 의안번호 : 30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으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최하위인 지역으로,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밀도 상승, 과잉 경쟁, 출산 후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초산 연령 상승과 동반하여 난임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부부가 함께 참여하고 의지해야 하는 치료 전 과정에 동행할 수 있는 휴가 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은 시술종류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 공무원의 경우 정자 채취일 단 하루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뿐 배우자 치료 시 동반할 수 있는 휴가 근거가 전무하며, 이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해 난임 치료를 위한 공무원의 휴가 여건 부족을 지적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은 배우자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을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도 동행 휴가를 허용하는 조례를 신설해 어려운 치료 과정에 부부가 함께 참여해 이겨낼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난임치료 시술 공무원 및 배우자의 특별휴가 인정(안 제 29조 제11항)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같음

(3)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8. 20.(수) ~ 2025. 8. 24.(일) (5일간)

나) 예고결과 : 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원안동의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24년 12월 의결)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임.

2 배우자 난임치료 시술 시의 동행휴가 부여(안 제29조제11항 신설)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특별휴가 항목에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를 명문화 하여 난임치료 시술에 남성공무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재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특별휴가 제도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7(특별휴가)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고 있음.
-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 여성·남성공무원 각각에 별도로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29조제10항에서 난임치료시술휴가를 규정함.
 - 구체적으로, 여성공무원은 난임치료시술 유형에 따라 2~4일, 남성공무원의 경우 정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난임치료시술휴가(특별휴가) 일수>

구분	난임치료시술 특별휴가 일수
여성원인	■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2일 ■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총 3일 ■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총 4일
남성원인	■ 정자채취일 1일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난임시술 특성상 배우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난임시술을 위해 타 시·도로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함에도¹⁾ 배우자의 난임시술일에 활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음.
-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써 이미 난임치료를 위한 배우자 동행휴가를 도입해왔고 이들 사례를 전국 모든 공무원에 확산·공통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²⁾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년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 방안」 권고안을 의결하여 난임시술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에게 난임치료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를 확대할 것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정책제안 하였음.

1)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 약 269개 중 대다수가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타 지역 공무원들의 경우 난임시술을 위해 타 시·도로의 이동이 불가피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주하는 지역 주변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난임시술시의 휴가 확대 필요성에서 배제할 순 없을 것임.

2)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청 포함)등은 복무조례에 동행휴가를 규정, 여성공무원 시술종류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난임치료시 동행휴가 부여.

- 부부가 함께 난임시술 휴가를 사용하는 등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난임시술에 동행하는 배우자에게도 난임치료 동행 휴가 사용을 허가하도록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것임.
- 본 개정안은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³⁾ 중 서울시의회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를 조례에 선반영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때마다 여성원인으로 여성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음.
- 향후 본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배우자의 시술 유형에 따라, 기존 여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난임치료시술 유형에 따른 휴가 일수 만큼* 남성공무원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 배우자 인공수정 등 시술 시 2일, 동결 보존 배아 이식 시술 시 총 3일, 난자 채취 체외수정 시술 시 총 4일.

3)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밖에 난임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국가검진 항목에 가임력검사 포함, 법률혼 부부의 난자·정자 동결에 대한 배우자 동의 폐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증명 폐지, 난임지원결정통지 전 시술 시작시의 지원금 소급 지원 등을 보건복지부를 통해 추진하도록 함.

<개정안 제29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특별휴가) ① ~ ⑧ (생략)	제29조(특별휴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공무원 은 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 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⑨ ----- 제8항 ----- -----.
⑩ (생략)	⑩ (현행과 같음)
<신설>	⑪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 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 마다 제10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⑪ ~ ⑬ (생략)	⑫ ~ ⑬ (현행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와 같음)
⑭ 제16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 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 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 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6항제1호에 따 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 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 휴 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 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 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⑭ 제17항에 ----- ----- ----- -----제17 항제1호----- ----- -----. ----- ----- -----.
⑮ (생략)	⑮ (현행 제18항과 같음)

- 한편, 본 개정안은 배우자의 난임치료 동행휴가를 기존 난임치료 휴가에 관련된 제29조제10항의 아래에 위치시키고자 안 제29조제11항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제29조제11항부터 제18항까지는 항 번호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9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그밖에 안 제29조제9항의 경우 지난 '25년 1월 3일 개정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제29조제5항 신설)에 따른 항 번호 변경 사항을, 안 제29조 제18항은 본 개정안에 따라 수정될 항 번호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종합 검토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24년 12월 의결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 중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제도(특별휴가)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 현재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공무원 대상 다양한 휴가제도가 도입·확대되어 있음에도⁴⁾ 여전히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음.
- 한편, 난임치료 과정에서 여성에게 더 많은 시간과 신체적·심리적 부담이 요구되므로, 향후 관련 휴가제도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4)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휴가 확대,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 임신검진휴가 및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 부여,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부여, 난임치료휴가 부여,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교육지도시간 부여 등.

- 특히, 시술 특성상 배우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의료기관 접근성도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난임치료를 위해 배우자가 동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이에,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적 제안을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난임치료 과정의 여성에게 집중된 치료 부담을 분담하고 난임치료를 부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촉진하고자 함.
- 특히, 난임 치료가 신체적·정신적으로도 부담스러운 과정임을 고려할 때, 남성 공무원의 동행휴가 부여는 여성 배우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나아가 남성 공무원의 만족도 및 직무 몰입도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여성 공무원 본인이 난임치료 휴가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도 고민해나가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난임 문제를 부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 촉진과 공무원 조직 전반에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에 영향 미칠 것으로 사료됨.

담당 연락처

02-2180-7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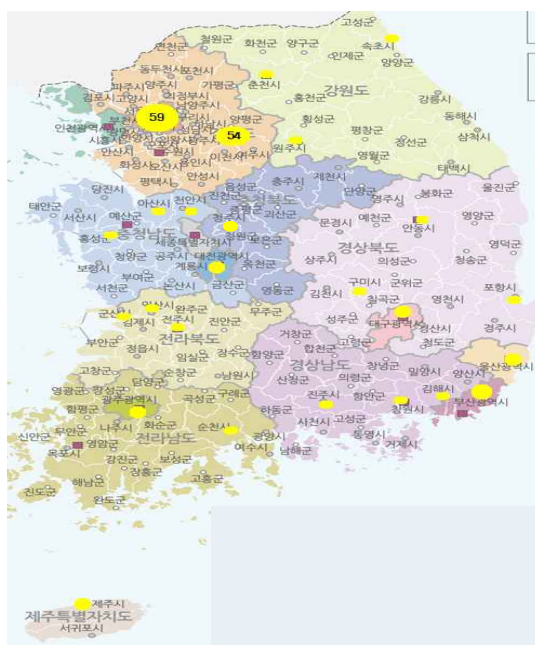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중, ‘배우자 난임시술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배우자의 난임시술 동행을 위한 휴가 부족

현 황

-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 약 269개 중 대다수가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난임시술을 위해 타 시·도로의 이동이 불가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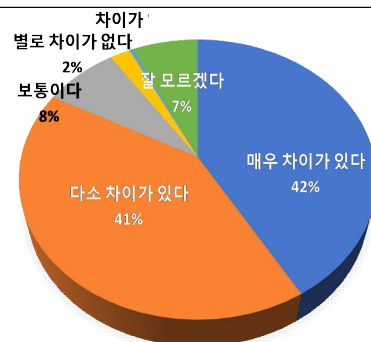
지자체	난임병원	인공+체외	인구수
서울특별시	59	36	9,366,283명
경기도	54	34	13,661,438명
강원도	7	5	1,522,542명
충청남도	12	6	2,134,817명
충청북도	8	2	1,591,485명
경상남도	18	6	3,236,224명
경상북도	10	5	2,544,174명
전라남도	5	2	1,794,967명
전라북도	11	7	1,745,885명
제주도	4	1	672,252명
부산광역시	27	15	3,280,749명
인천광역시	15	7	3,011,073명
대구광역시	10	10	2,367,183명
광주광역시	10	5	1,413,606명
대전광역시	11	7	1,440,558명
울산광역시	5	3	1,100,304명
세종시	3	2	387,940명
합계	269	153	



<그림> 지역별 난임병원 현황 (체외수정 가능 병원)

<(참고) '24. 10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 (의료기관 접근성)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난임 의료기관 접근성에 차이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약 31%에 달함



-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난임치료시술휴가(특별휴가) 사용 가능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난임치료시술휴가(특별휴가) 일수

구분	난임치료시술 특별휴가 일수
여성원인	■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2일 ■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총 3일 ■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총 4일
남성원인	■ 정자채취일 1일

※ '24년 1월~9월 난임치료휴가 사용현황(166개 지자체)에 따르면, 휴가 사용인원 및 사용일수 모두 여성이 남성의 2배 이상이었음

< 난임치료휴가 사용 현황('24. 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여성 공무원		남성 공무원	
사용인원	평균사용일수	사용인원	평균사용일수
4.52명	3.04일	2.22명	1.24일

문제점

-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혼자 이동하기 어렵고, 시술 특성상 난자·정자채취일, 이식일 등에 배우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관련 휴가 제도 미비

【 민원사례 】

- 아내가 배아이식을 하는 날에 피를 뱉을 수 있어 남편이 같이 동행해서 다녀와야하는데, 남편도 난임휴가를 사용가능한지 ('20. 11월, 국민신문고)
- 아내의 난임시술에 동행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배아 이식을 결정해야 하는 날에는 남성도 동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함 ('19. 6월, 국민신문고)

- 일부 지자체*가 자체 조례로써 '난임치료시술 동행휴가제'를 도입한 사례를 확산할 필요

*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청 포함)등은 복무조례에 동행휴가를 규정, 여성공무원 시술종류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난임치료시 동행휴가 부여

【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

제20조(특별휴가) ③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

제18조(특별휴가) ⑪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 휴가를 줄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

제23조(특별휴가) ⑬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 경기도 난임치료시술휴가 사용현황: '24년 상반기 동행휴가를 사용한 남성은10명이며, 1인당 평균 사용일은 1.9일

구분	난임치료시술휴가						동행휴가(남성)	
	소계		여성		남성			
	사용 인원	1인당 사용일	사용 인원	1인당 사용일	사용 인원	1인당 사용일	사용 인원	1인당 사용일
2024년	26	2.1	11	3.0	15	1.5	10	1.9
2023년	33	3.6	21	3.6	12	3.6	-	-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도입된 난임치료 동행휴가를 복무규정에 명시하여 전국 공통 적용, 동행휴가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건의('24. 10월, 권익위 실태조사)